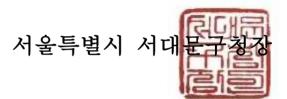
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

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『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』 구역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에 대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및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11. 14.



- 1. 사 업 명 : 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2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-111번지 일대
- 3. 사업시행자 : 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박 종 곤)
- 4. 열람공고 내용 : 수용재결신청서(대상자별)
- 5.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기간 : 2019.11.14. ~ 2019.11.28. (14일간)
- 6. 공고방법
 - 가. 서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및 게시판 게재
 - 나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 통지
- 7. 열람장소 :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(4층)
- 8. 관계도서 : 열람장소에 비치
- 9. 의견제출 : 열람기간까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서대문구청장(도시재 정비과)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의견서 기재내용
 - 제시할 의견내용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
 - 별첨된 의견서 서식 참조
- 나. 제출기한 : 2019.11.21.한(우편발송인 경우 우편 소인 날짜 기준)
- 다. 제 출 처
 - 직접방문 :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재개발팀
 - 우편발송 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(우편번호 03718)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(4층)
 - 이메일 전송 : wjdwjddl@sdm.go.kr
 - FAX 전송 : 02)330-1597 (FAX 전송시 수신여부 확인)
- 라.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은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마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(재개발팀 ☎02-330-1940)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제출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